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6

발의연월일: 2024. 6. 19.

발 의 자:이헌승·박덕흠·곽규택

김종양ㆍ서지영ㆍ윤상현

서일준 · 김도읍 · 박수민

고동진 • 박준태 • 최형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 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중 "미만"을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97조제4항제5호 중 "미만"을 "미만 또는 66개월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동물생산업자는 제1항에서	②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월령이 12개월 <u>미만</u> 인 개·고	1 <u>미만 또는 66</u>		
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u>개월 이상</u>		
아니할 것			
	_		
2. • 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7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97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7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	5		
여 월령이 12개월 <u>미만</u> 인 개·	<u>미만 또는 6</u>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u>6개월 이상</u>		
영업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